

 안전행정부	<b>보 도 자 료</b>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주민과
	2014년 8월 1일(금) 조간 (7.3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과 장 문금주 사무관 이갑준 과장 김종한 사무관 고종오
		연락처	02-2100-2816 02-2100-3877

##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

-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7.31(목)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먼저,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 \* 위탁규정 준수 미흡, 개인정보 과다 수집, 접근권한 관리 및 관리감독 미흡 등

-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191개 업체 중 116개 업체에서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관리감독 미흡 등

- 이러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 대책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 우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제도

-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

-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 (예: 1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②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 ③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 또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암호화는 '16. 1.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 (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 홈페이지(www.g-pin.go.kr 등)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 ④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 (예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모바일앱에 한하여 적용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한하여 적용

\*\* (예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유사중복 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수준을 기준으로 각 개별법 제재수준 상향 조정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 ⑤ 향후 조치 계획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1.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도록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적용요건,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토록 개선
  - ※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예 : 1년) 부여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증가하는 제도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하도급법에만 일부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범위) 개인정보보호법·정통망법·신용정보법</li> <li>· (적용요건) 고의·중과실</li> <li>· (입증책임)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li> <li>· (배상규모) 재산적·정신적 피해 등 손해액 3배까지 가능</li> <li>·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이후 유출사고</li> </ul>

※ 중과실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이외 누설·이용·제공하는 경우 등

② 법정손해배상제도 :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정해진 금액(300만원 이내)을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범위) 정보통신망법 * '14.5.28 공포, '14.11.29 시행</li> <li>· (적용요건) 고의·과실</li> <li>· (입증책임)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li> <li>· (배상규모)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 이내 상당금액</li> <li>·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이후 유출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li> </ul>

⇒ (기대효과) 국민은 쉽고 간편하게 유출 피해 보상

○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도록 유도

## 2.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정보유출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몰수 및 추정)

### □ 범죄처벌 수준 강화

구분	기존	개선	비고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목적 제공	·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유출 관련 범죄수익 환수

기존	개선
· 없음 *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적용대상 아님	→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규정 마련 * 대상 예시: 5년이하 또는 10년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 수익

### □ CEO의 관리책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에게 CEO 보고의무를 부과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CEO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과태료 2천만원) 부과
- CEO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의 해임 등 징계권고 대상 확대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감독기관의 CEO 해임권고 가능  
→ 정보통신망법까지 확대 (\*주로 규모가 큰 이동통신사 등 대상)

⇒ (기대효과) 범죄에 대한 기획비용을 높여 개인정보관련 범죄 동기 억제

### 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 방안 마련

◇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방안을 마련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변경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

구분	기존	개선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국민 권리·의무 관련성 감안)
변경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아래 요건 추가 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 시행시기는 신청절차,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 준비, 주민등록법 개정 등이 완료된 이후 시행
-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제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 (안행부)
- 변경 후에도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근거법령을 줄이고 다양한 개인식별 수단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

⇒ (기대효과) 유출된 주민번호에 따른 생명·신체의 위해(危害)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불안 해소

## 7.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용 대상 정비

구분	기존	개선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영리로 사용하는자 · 약 273만개+스마트폰앱 160만개	→ ·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 · 약 37만개+스마트폰앱 160만개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 이용·제공자 · 약 7만개	→ ·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 약 3천5백개
개인정보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별법 적용대상 제외 여부 불명확	→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별법 적용사업자는 각 소관부처에 위임·위탁

○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개별법상 제재수준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

\* (예시) 제3자제공 미동의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3천만원, 정보통신망법 1천만원, 신용정보법 없음→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모두 3천만원으로 상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강

기존	개선
· 인행부가 기본계획 수립, 분쟁조정위원 임명, 사무국 운영 등 담당	→ · 개인정보보호위가 담당  <개인정보보호위 권한 추가 > ①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②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③ 법령간 정합성 유지 ④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 (기대효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현장에 정착